



한국인공지능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 개정제안서

| 2025.12.



한국인공지능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 개정제안서

| 2025.12.

발간사

인공지능은 이제 특정 산업의 보조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시민의 일상을 동시에 뒤흔드는 새로운 ‘기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멀티모달 AI, 에이전트형·퍼지컬 AI로 이어지는 급격한 진화는 우리 사회의 경쟁력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과 제도는 더 이상 “나중에 정비해도 되는 후순위 과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EU에 이어 두 번째로 포괄적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 “법의 공백”을 방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규범 제정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기술과 시장, 국제 규범 환경이 숨 가쁘게 변하는 현실 속에서, 이 법이 우리 산업과 시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최선의 답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자리에서 강조해 온 것처럼, 높은 규제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없는 불명확한 규제”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역시 제정 과정의 어려움과 시간적 제약 속에서, 일부 핵심 개념과 규제 구조가 충분히 다듬어지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의, 인공지능 시스템과 구분되는 AI 모델의 규율,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 인공지능 사업자와 책임 주체의 구분, 제34조를 비롯한 여러 의무 조항과 조사·제재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 체계, 그리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와 규제 샌드박스 체계 등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미래 세대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핵심 동력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최우선 목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과감하게 진흥하되,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낮추는 차원을 넘어,

- 법 규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 규제 내용과 수단의 비례성
-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 실질적인 법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2025년 3월, 학계·법조계·산업계·연구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는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괄소위와 네 개의 분과(① 적용 범위 합리화, ② 각종 의무 합리화, ③ 조사·제재 합리화, ④ 혁신 특례 신설)로 구성되어, 수개월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위원회는 출범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나 국회가 아닌 **민간 주도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 모임**일 것. 둘째,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익과 장기적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 셋째, 순수한 학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가 처한 현실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실천적·실무적 관점**을 함께 견지할 것.

그 치열한 논의의 첫 번째 결실은 이 권고안 제1부에 실린 「위원회 공통요구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공통요구안은 네 개 분과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최소한의 공통분모입니다. 여기에는 고영향 인공지능 개념 정의 규정의 정비, 적용 제외 규정 확대를 통한 적용 범위 합리화,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에 규정된 의무 범위의 합리화를 위한 고려사항 추가, 과태료 규정의 3년 유예,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로부터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2단계로 변경하는 제재 합리화 등 핵심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방향에는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 구성과 산업 구조, 국제 통상 환경, 인권 및 기본권 보장 수준에 따라 입법 기술과 구체적 조문 구성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전원 합의되지 않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향후 국회와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거나 하위법령·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2부에 각 분과 및 개별 연구위원의 다양한 개정 제안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어떤 제안은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또 다른 제안은 기본권 보호 강화를 강조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생성형 인공지능과 범용 AI 모델을 어디까지 규율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일부 규정의 시행을 유예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이 다루는 현실이 복잡할수록, 다양한 관점과 설계를 공론의 장에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민주적 입법 과정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 권고안에서는, 수많은 논점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통 개정 요소”를 별도로 도출하여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AI 규제 선진국”이 되는 것보다 앞서, “**AI 법치주의 선진국**”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입법권고안은 어디까지나 “완성된 정답”이 아니라, **입법과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이자 출발점**입니다. 본 권고안에 담긴 공통요구안과 각 분과별·연구자별 개정 의견이 향후

-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논의
- 정부의 하위법령 및 지침·고시 제정
- 개별 부처와 감독기관의 정책 수립 및 집행
- 후속 특별법·부문법 정비 논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AI 규범을 설계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미국, OECD 등의 논의와도 긴밀히 비교·연계되어, 대한민국의 AI 법제가 **글로벌 경쟁력과 인권·민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는 모델**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구 작업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AI 법 입법 권고안**이라는 점입니다.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와 공공·연구기관 출신 전문가들이 모두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야간과 주말을 쪼개어 원고를 집필하고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보여 주신 헌신과 공공성, 그리고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 권고안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각 소위를 이끌어 주신 임용, 박상철, 권창환, 안정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구반과 자문단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초기 기획과 운영, 자료 정리, 워크숍 준비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사무국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읽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실린 개정 의견 하나하나를 “정답”으로 보시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AI 시대의 법과 규범을 설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토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은 결국 살아 움직이는 사회의 산물이며, 인공지능 시대의 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입법과 집행의 각 단계에서, 그리고 산업 현장과 시민사회의 각 자리에서, 이 권고안 발간을 계기로 보다 풍부한 논의와 창의적인 대안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규율 체계, 윤리적·사회적 쟁점, 국내외 법제 비교 연구 등 실무·이론 및 기술·법정책을 연계하는 융복합적이고 통섭적인 연구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AI법 정책 학술·연구 공동체로서, **AI 진흥과 기본권 보호가 조화되는 법제도 설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 권고안이 그 여정의 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와 ‘AI G3’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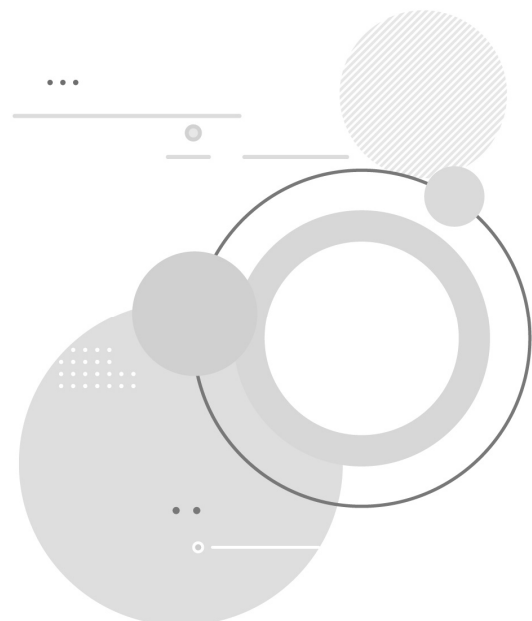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최 경 진

Contents

1.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 구성	1
2. 1부 위원회 공통요구안	7
3. 2부 각 분과별 추가 제안	13
1소위 / 15	
2소위 / 46	
3소위 / 55	
4소위 / 62	



1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 구성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 구성

○ 개요

- 총괄소위: 소위별 조정 및 전체 운영 (위원장 최경진 교수, 13인)
- 제1소위: AI 기본법 적용 범위 합리화 (위원장 임용 교수, 10인)
- 제2소위: AI 기본법상 각종 의무 합리화 (위원장 박상철 교수, 15인)
- 제3소위: AI 기본법상 조사·제재 합리화 (위원장 권창환 부장판사, 6인)
- 제4소위: AI 혁신 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위원장 안정민 교수, 6인)

○ 총괄소위 (위원장 최경진 교수, 13인)

※ 이하 위원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기재함 (위원장 제외)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최경진 교수 (가천대)	위원장
2	권창환 부장판사 (부산회생법원)	제3소위 위원장
3	김민경 판사 (인천지방법원)	
4	김병필 교수 (KAIST)	제2소위 위원
5	박상철 교수 (서울대)	제2소위 위원장
6	박혜진 교수 (한양대)	제2소위 위원
7	안정민 교수 (한림대)	제4소위 위원장
8	윤혜선 교수 (한양대)	제3소위 위원
9	이상용 교수 (건국대)	
10	이소은 교수 (영남대)	제2소위 위원
11	이수경 교수 (계명대)	제1소위 위원
12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	제3소위 위원
13	임용 교수 (서울대)	제1소위 위원장

○ 제1소위 (위원장 임용 교수, 10인)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임용 교수 (서울대)	위원장
2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연구반
3	박도현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연구반
4	박소영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반
5	오정익 변호사 (법무법인 윈)	연구반
6	이수경 교수 (계명대)	연구반 ※간사
7	이중기 교수 (홍익대)	연구반
8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린)	연구반
9	정다영 교수 (충남대)	연구반
10	최경진 교수 (가천대)	연구반

○ 제2소위 (위원장 박상철 교수, 15인)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박상철 교수 (서울대)	위원장
2	김도엽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연구반
3	김병필 교수 (KAIST)	연구반
4	김현수 교수 (부산대)	연구반
5	박영우 겸임교수 (세종사이버대)	연구반
6	박혜진 교수 (한양대)	연구반
7	신용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연구반
8	우지숙 교수 (서울대)	연구반
9	이강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연구반
10	이상현 교수 (경북대)	연구반
11	이소은 교수 (영남대)	연구반 ※간사
12	이해원 교수 (강원대)	연구반
13	정채연 교수 (포항공대)	연구반
14	주현경 교수 (충남대)	연구반
15	채은선 수석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반

○ 제3소위 (위원장 권창환 부장판사, 6인)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권창환 부장판사 (부산회생법원)	위원장
2	송재일 교수 (명지대)	연구반
3	윤혜선 교수 (한양대)	연구반
4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	연구반
5	정원준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반 ※간사
6	한상훈 교수 (연세대)	연구반

○ 제4소위 (위원장 안정민 교수, 7인)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안정민 교수 (한림대)	위원장
2	김권일 부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반
3	송도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비트)	연구반
4	장완규 교수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연구반
5	정종구 박사 (서울대)	연구반 ※간사
6	최인선 수석연구원 (NIA)	연구반

※ 자문위원 ; 16명

2

1부

위원회 공통요구안

□ 인공지능(제2조 제1호) : 공통요구안에서는 개정 제외(전면 개정안에서는 삭제)

□ 고영향 인공지능(제2조 제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u>미치거나</u>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u>미치고</u> 위험을 초래할 <u>현저한</u>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

□ 이용자(제2조 제8호) : 공통요구안에서는 개정 제외(전면 개정안에서는 삭제)

□ 적용범위(제4조)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이 법은 <u>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u>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이 법은 인공지능 또는 그 산출물이 다음 각 호에 따라 개발되거나 이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경우 2. 과학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개발·이용되는 경우 3. 출시 전 또는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시험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개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사업자의 책무(제34조)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u>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5.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u>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5.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영향이나 위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u>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 시행일(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 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 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	---

터 시행한다.	터 시행하고, 제43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재 합리화(제40조, 제43조)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 제>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

AI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는 공통요구안이 참여한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개정 방향에까지 일치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이어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1)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와 관련하여 ① 입법 착오, ②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 ③ 고지·표시 대상의 문제와 (2)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제34조)와 관련하여 ① 보호대상의 오류, ② 사업자간 의무 배분의 불합리, ③ 활용 맥락의 미고려, ④ 중복 규제 해소 방식의 불완전성 등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개정에 따른 충격이나 오류를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한 보다 깊은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3

2부

각 분과별 추가 제안

1 소위

■ 대 상: 인공지능의 정의

■ 조 문: 제2조 제1호

■ 담 당:

- 주집필자 - 임 용
- 부집필자 - 이수경, 박도현

임용 위원

1. 현행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개정 필요성

AI기본법 제2조 제1호는 법의 규율대상인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동 개념은 법의 타 개념(예를 들어 “고영향 인공지능”(4호) 등)은 물론이고 법 전반의 해석과 적용의 기초가 되는 기본 개념으로 기능함. 그런데 현 조항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개념적 징표로 사용하여 AI를 정의하는 의인화(anthropomorphize) 기반의 접근을 택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은 AI기술의 최신 발전 방향과 지향점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규율범위와 관련해서도 과잉 또는 과소 포섭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아울러 현 조항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AI의 최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agentic AI나 physical AI 등의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규율의 왜곡 또는 무력화로 이어질 우려까지 있음. 따라서 현 조항 하의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해는 채택하기 어려움.

한편 현 조항 하의 AI의 개념은 동조 제2호의 “인공지능시스템” 및 제3호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념들과 연관 지어 함께 논의할 필요 있음. 법상 “인공지능시스템”의 정의는 OECD가 정의한 AI 시스템의 개념(2019년 및 2024년)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와 다르게 의인화한 AI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치고 조항간 충돌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임. 이런

측면에서 보다 진보한 OECD의 2024년도 AI 시스템 정의와 주요 국가의 최근 입법례를 참고하여 AI를 개념화하고, AI 시스템은 그러한 AI를 활용 내지 구현하여 외부의 실제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 툴 등 여하한 시스템을 포섭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한편 AI기본법에서 AI를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정의함에 있어서는 (i) 해당 정의를 토대로 법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규율범위의 합리적인 확정(즉, 과잉 및 과소 포섭의 최소화)이 가능하고, (ii) 그러한 합리적인 확정이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미래에도 (또는 적어도 예정된 개정 시한 전까지) 기대 가능하다(future-proof)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기가 어렵다면 오히려 법에서 AI를 정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

3. 개정 제안

(1) 제안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기계 또는 사람의 입력값을 사용하여 실제 또는 가상 환경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모델로 추상화하며, 모델에 의한 추론을 통해 정보 또는 행동에 대한 선택을 수식화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표를 위하여 실제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콘텐츠, 추천 또는 결정 등(이하 “예측등”이라 한다)의 출력값을 산출하는 기계 기반 체계를 말한다. 다만, 프로그래밍적 접근 또는 명령의 자동적 실행을 위해 사람만이 설정한 규칙 기반 체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계를 제외한다.
2. “모델”이란 주어진 입력값으로부터 예측등을 산출하기 위해 입력값의 분포로부터 연산적, 통계적 또는 기계학습적 기법을 활용하여 추상화한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 AI기본법 및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또 가능함. 향후 산업·기술적인 변화는 적절한 개정을 통해 쫓아갈 수 있음.
- 의인법에서 벗어나 국내외의 AI 기술 관련 입법 동향(미국 국가AI 이니셔티브 법, OECD의 2024년도 AI 정의, EU AI법 등)을 반영하여 행동중심적인 접근(behavior-focused approach)의 토대 위에서 합리성(rationality)에 근거하여 AI 개념화를 시도함.¹⁾
- EU AI법을 참고하여 규율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법의 종래의 전문가 시스템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 동법의 AI 관련 기본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계학습의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는 “모델”을 정의하여 타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AI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향후 재정의(개정)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1) 최근 들어 AI의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의인법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튜링 테스트(Turing test)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는 갈릴레오 테스트(Galileo test)가 제안되기도 함.

(2) 제안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표 하에, 입력값을 사용하여 실제 또는 가상 환경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추상화한 모델의 추론을 거쳐,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실제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콘텐츠, 추천 또는 결정 등(이하 “예측등”이라 한다)의 출력값을 산출하는 기계 기반 체계를 말한다. 다만, 프로그래밍적 접근 또는 명령의 자동적 실행을 위해 사람만이 설정한 규칙 기반 체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계를 제외한다.

- Agentic AI 등 향후의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future-proofing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안 1과 비교하여 정의를 더 단순·추상화하고, 모델의 정의도 별도로 두지 않음.
- 다만, 제안 2의 경우에도 AI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재정의(개정)가 필요할 수 있음.

(3) 제안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 계속되는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경제체제 및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견되는 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음.
 - ‘경쟁의 촉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법도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경쟁”에 대해 그 개념 확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기술적인 기반 체계에 해당하는 ‘인터넷’의 경우도 제반 관련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동호를 삭제할 경우 전문가 시스템 등의 제외 등 법의 적용범위의 합리적 확정은 “인공지능시스템” 등과 같은 다른 개념 정의 또는 조항에서 이뤄져야 함.

[이수경 위원의 추가의견]

-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조문으로서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정의내림으로써 문구의 해석으로 인하여 포섭되지 않는 신기술(기술의 발달을 상정하고)이 등장할 때마다 대응하는 것에도 의문
- 현실적인 입장에서 문구 수정의 제안 2에서 인공지능을 의인화 하여 표현한 것에 대한 비판점에 공감하며, 대규모 언어모델이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2가 현실적인 개정의 방향이 될 수 있음

■ 대 상: 인공지능 시스템

■ 조 문: 제2조 제2호

■ 담 당:

○ 주집필자 - 박도현

○ 부집필자 - 강태욱

박도현 위원

1. 인공지능시스템 (제2조 제2호)

[현재]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수정 제안]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또는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근거 1: ‘주어진’이라는 문구는 human-engineered 인공지능만을 전제한 표현으로, 자율성이 극대화되어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단계에 이른 인공지능을 포괄할 수 없음. 최근 해외 용례도 이를 고려하여 ‘given set of’ 대신 ‘explicit or implicit’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근거 2: ‘실제 및 가상환경’을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경우 실제와 가상환경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만 포함됨. 해외 용례도 모두 ‘real/physical or virtual environment’임.

근거 3: ‘추론’은 discriminative AI를 전제한 용어로, generative AI를 정의한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양자를 포괄하는 광의의 단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산출’로 수정하였음.

※ 토론: 해외 용례에는 많은 경우 ‘from the inpu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system의 정의상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input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불필요한 수식어구라고 판단함. 다만 이 문구를 넣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system이라는 특성을 엄밀하게 강조할 수 있어 ‘실제’ 앞에 ‘입력을 토대로’와 같은 문구를 추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참고 자료]

- 1) (2023) US 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system [is] an engineered or machine-based system that can, for a given set of objectives, generate outputs such as predictions, recommendations, or decisions influencing

real or virtual environments. AI systems are designed to operate with varying levels of autonomy.”

- 2) (2024)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system is a machine-based system that, for explicit or implicit objectives, infers, from the input it receives, how to generate outputs such as predictions, content, recommendations, or decisions that can influence physical or virtual environments. Different AI systems vary in their levels of autonomy and adaptiveness after deployment.”
- 3) (2024) EU, 「AI Act」: “AI system means a machine-based system that is designed to operate with varying levels of autonomy and that may exhibit adaptiveness after deployment, and that, for explicit or implicit objectives, infers, from the input it receives, how to generate outputs such as predictions, content, recommendations, or decisions that can influence physical or virtual environments.”
- 4) (2024)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I] system means a machine-based system that, for explicit or implicit objectives, infers, from the input it receives, how to generate outputs such as predictions, content, recommendations or decisions that may influence physical or virtual environments. Different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vary in their levels of autonomy and adaptiveness after deployment.

※ ‘시스템’의 의미와 추가 쟁점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이 용어는 이 법의 규제 대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루는 핵심 용어이므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음.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의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된 개별 구성요소의 조합을 가리킴.

쟁점 1: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모델’은 시스템을 이루는 개별 구성요소로 볼 수도 있고, 그 자체로 개별 구성요소의 조합인 시스템으로 볼 여지도 있음. 만일 이를 전자로 해석하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2조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파운데이션 모델에 터 잡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해당 의무를 지게 됨.

쟁점 2: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는 인공지능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시스템에 이르지 않은 개별 구성요소 수준에 불과한 제품과 서비스를 굳이 진흥하거나 규제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임. (일종의 기초학문 역할을 담당하는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진흥이 필요한 것과는 별개임) 시스템에 이르지 않은 개별 구성요소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정의하는 것도 같은 문제가 있음.

[참고 자료]

1) ISO/IEC/IEEE 15288:2023,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 life cycle processes」: “arrangement of parts or elements that together exhibit a stated behaviour or meaning that the individual constituents do not”

Note 1 to entry: A system is sometimes considered as a product (3.32) or as the services (3.42) it provides.

Note 2 to entry: In practice, the interpretation of its meaning is frequently clarified by the use of an associative noun, e.g. aircraft system. Alternatively, the word “system” is substituted simply by a context-dependent synonym (e.g. aircraft), though this potentially obscures a system principles perspective.

Note 3 to entry: A complete system includes all of the associated equipment, facilities, material, computer programs, firmware, technical documentation, services (3.42), and personnel required for operations and support to the degree necessary for self-sufficient use in its intended environment (3.16).

2) ISO/IEC/IEEE 12207:2017,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combination of interacting elements organized to achieve one or more stated purposes”

Note 1 to entry: A system is sometimes considered as a product or as the services it provides.

Note 2 to entry: In practice, the interpretation of its meaning is frequently clarified by the use of an associative noun, e.g., aircraft system or database management system. Alternatively, the word “system” is substituted simply by a context-dependent synonym, e.g., aircraft or database, though this potentially obscures a system principles perspective.

Note 3 to entry: A system can include the associated equipment, facilities, material, software, firmware, technical documentation, services and personnel required for operations and support to the degree necessary for use in its intended environment.

Note 4 to entry: See for comparison: enabling system, system-of-interest, system of systems.

■ 대 상: 고영향인공지능

■ 조 문: 제2조 제4호

■ 담 당:

- 주집필자 - 전용준, 박소영
- 부집필자 - 오정익, 박도현

전용준 위원

[현재]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목 ~ 차목 생략)

-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수정 제안]

4. “고위험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 ‘중대한 영향’을 삭제하고 ‘고영향’을 ‘고위험’으로 수정

* 각호에서, 가목 ‘에너지의 공급’, 나목 ‘먹는물의 생산공정’이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현재 열거된 고영향 AI 영역을 크게 구분하면, 차별적 취급이 문제되는 AI 영역과 사람의 안전이 문제되는 AI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박상철 아래 논문, 미국 OMB 메모랜덤과 같은 취지). 제 2조 고영향 AI를 이와 같이 구분한 후, 차별적 취급이 문제되는 AI 영역에 대해서는 편향방지 대책 위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의 안전이 문제되는 AI 영역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 관점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거 1: 당초 발의된 법안에는 EU AI Act와 유사하게 ‘고위험 인공지능’ 개념이 사용되었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위험’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고영향 인공지능’이라

는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변경됨. 그러나 ‘고영향’ 내지 ‘중대한 영향’에는 법률에 의해 규제할 필요가 없는 ‘긍정적 영향’도 포함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 모호해짐. ‘고영향’을 ‘고위험’으로 변경하고, ‘중대한 영향’을 삭제함

근거 2: 법문상 ‘중대성’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도 ‘중대한 영향’을 삭제해야 하는 주장의 근거임. 중대성의 의미는 시행령으로도 위임되어 있지 않고, 과기부 장관의 가이드라인 및 유권적 확인에 의해 판단되는 구조임(제33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구성요건은 예측 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근거 3: EU AI Act는 ‘고위험 AI시스템’을 규율하고 있으며, 미국 OMB 메모랜덤(M-24-10)은 AI를 rights-impact AI와 safety-impact AI로 구분하고 있으나 최종 목적은 이들 AI에 대한 최소 리스크 관리 실무(minimum risk management practice)를 정착하려는 것 이므로, 입법례를 보아도 AI 법이 규율하여야 하는 대상은 위험성이 있는 AI이라고 할 것임

[참고 자료]

EU AI Act

미국 OMB 메모랜덤

박상철,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 전 개정 필요성’, 2024

박소영 위원

[현재]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 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 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활용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수정 제안]

(권익영향/안전영향 분리)

- 4. “권익영향 인공지능 용례”란 인공지능을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된 권익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결정에 활용하는 등 사람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용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례를 말한다.
- 4의2. “안전영향 인공지능 용례”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용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례를 말한다.

(최소 수정 버전)

-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사람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 나. 에너지, 물 등 국민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재화에 대한 배분
-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 자원의 배분과 순위 설정
-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채용절차
-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
- 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 의료기기의 사용
- 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작동 및 제어

- 아.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활용
- 자.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자율 작동
-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및 입학 사정
-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권익영향/안전영향 분리 버전]

- 근거 1: 차별 방지와 채점기준의 설명이 필요한 권익영향(rights-impacting) 인공지능 용례와 안전사고가 문제되는 안전영향(safety-impacting) 인공지능 용례는 법적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함. 미국 OMB M-24-10처럼 권익영향/안전영향으로 분별할 수 있음
 - 근거 2: 권익영향 인공지능 용례는 편향과 불투명이 핵심 문제로, 법령상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에 대한 편향의 측정과 경감이 필요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종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에 대한 설명 방안 수립과 시행이 요구됨. 현재 고영향 AI의 책무로 사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권익영향 용례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음
 - 근거 3: 안전영향 인공지능 용례는 안전기준(긴급정지 및 보안관리조치 등)이 중요한데, 현재는 공정성, 투명성을 요구하여 용례와 맞지 않음
- ※ 토론: 제2소위 논의와 조화가 필요함

[최소 수정 버전]

- 근거 1: 상임위 과정에서 ‘위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하고자 가치중립적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음. EU AI Act와 유사하게 초안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라고 칭하였으나 상임위 과정에서 논의되며 변경된 사실을 고려하면,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이 단기간 내에 개정되기는 어려워 보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내용을 유지하되 개선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음
- 근거 2: 현재 고영향 인공지능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바, 실제로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범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현재에 있는 각 목을 보다 구체화하여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를 좁힘
- 근거 3: 권익영향 용례와 안전영향 용례를 별도로 분류하여 유사한 용례끼리 인접한 항목에 배치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이후 주조문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법적 대응

방식을 수립할 때 조문 구성이 보다 용이하도록 함

근거 4: 물의 경우 '생성 공정'에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와 같이 국민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그 배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함께 기술함

[참고 자료]

박상철,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 전 개정 필요성 - 규제 조항의 체계·축조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2024

EU AI Act

미국 OMB M-24-10

■ 대 상: 생성형인공지능

■ 조 문: 제2조 제5호

■ 담 당:

- 주집필자 - 정다영
- 부집필자 - 박도현, 강태욱

정다영 위원

생성형인공지능 (제2조 제5호)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수정 제안 1안]

- 제2조 제5호 삭제
- 제31조 제1항 중 ‘생성형 인공지능’ 문구 삭제
- 제31조 제2항 삭제

[참고]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 제안 2안]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학습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콘텐츠,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수정 제안 1안]

근거 1: 제2조 제5호 삭제 및 제31조 제1항 중 ‘생성형 인공지능’ 문구 삭제

- 개별 규정에서 결과물의 특성에 따라 조치하면 충분하며, 일반적 개념정의로 불필요한 혼란 초래 가능성이 있음.
- 제2조 제5호 정의규정 전체를 삭제함에 따라 제31조 제1항 중 ‘생성형 인공지능’ 문구 또한 삭제함이 바람직함.

근거 2: 제31조 제2항 삭제

- 일률적인 결과물 표시 의무는 실효성이 낮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용자 권리 보호는 제1항 및 제3항의 구체적 고지 방식으로 충분함.

[수정 제안 2안]

근거 1: ‘학습한 데이터’로 수정

- 생성형 인공지능의 핵심 작동 방식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train)한 뒤, 그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구조인바, ‘학습한 데이터’로 표현함으로써, 생성형 인공지능의 실제 기술적 구조(학습 기반 생성 모델)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음.
- EU AI Act, OECD AI 원칙, 미국 NIST AI 프레임워크 등 주요 국제 기준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전 학습(pre-trained) 모델에 기반한 기술로 정의되는바, 국제적 기준과 용어 및 개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근거 2: ‘콘텐츠’ 표현 추가

- OECD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생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음.²⁾
- ‘결과물’이라는 용어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산출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인 ‘콘텐츠’를 추가 병기함으로써 생성형 AI의 활용 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

2) Generative AI systems that produce “content” —including text, image, audio, and video—have gained significant momentum. Although one could, for example, view the generation of text as a sequence of decisions to output particular words (or predictions of words that would be likely to appear in a specific context), content generation systems have become such an important class of AI systems that they are included as their own output category in the present revised definition.

[참고 자료]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1689/oj/eng>

OECD, Explanatory memorandum on the updated OECD definition of an AI system,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Papers, March 2024 No. 8, 2024.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4/03/explanatory-memorandum-on-the-updated-oecd-definition-of-an-ai-system_3c815e51/623da898-en.pdf

A&O Shearman, “Generative AI and the EU AI Act - A Closer Look”, 2023.

<https://www.aoshearman.com/en/insights/ao-shearman-on-tech/generative-ai-and-the-eu-ai-act-a-closer-look>

■ 대 상: 인공지능산업

■ 조 문: 제2조 제6호

■ 담 당:

- 주집필자 - 박소영
- 부집필자 - 박도현, 최경진

박소영 위원

인공지능산업 (제2조 제6호)

[현재]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수정 제안] 삭제

근거 1: 입법상 정의 조항은 법령 해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 규정이 없이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용어인 경우 그 용어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를 할 필요가 없음. 정의 조항이 없어도 같은 의미로 충분히 해석 가능한 경우에도 정의하는 것은 법률의 간결성을 저해할 수 있음

근거 2: ‘~산업’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제품·서비스와 연관된 활동 전반을 의미하여, ‘인공지능’ 정의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의 조항 없이도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이 그 의미를 특별히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됨

※ 단, 국내 입법례를 살펴보면 특정산업 관련 진흥법에서 ‘~산업’을 정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유지하여도 무방함

[참고자료]

법령입안심사기준

■ 대 상: 인공지능 사업자

■ 조 문: 제2조 제7호

■ 담 당:

○ 주집필자 - 전응준, 이수경

○ 부집필자 - 박도현, 정다영

전응준 위원

제2조 제7호 인공지능사업자

[현재]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수정 제안1-1]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수정 제안1-2]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업무적 활동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수정 제안2]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근거]

1.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 국가기관을 포함하면서 국가기관에 어울

- 리지 않는 ‘사업’이라는 표지를 사용하는 점을 개선할 필요 있음
2.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EU AI Act의 provider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provider는 직접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AI 시스템 내지 범용 AI 모델을 자신의 상표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됨(e.g. OpenAI). 반면 현행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정의에 AI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되는지 의문임
 3.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현행 조문 구조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을 제공받아서 관련 제품을 만들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 EU AI Act의 deployer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이나, deployer는 전문적, 업무적으로 자신의 권한하에 AI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므로, 양자의 의미가 상이함. deployer는 AI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개념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으로 보임.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개념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AI시스템 내지 제품을 기관 내부적으로만 이용하고 외부 자연인에게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는 현행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포섭되지 아니함(기관 내부 이용은 서비스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임).
 4. 현행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개념은 1차 이용사업자로부터 2차 이용사업자가 인공지능제품을 제공받고 이를 변형없이 최종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차 이용사업자를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개념으로 포섭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아래 use case 참조)
 5.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의무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의무가 구분되어야 하는 지점이 제31조 영역이라고 보이므로, 제31조의 각 항의 수범자를 구분하는 검토와 병행하면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use case: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VFX스튜디오에게 영화의 일부 장면을 맡긴 영상제작자를 상정. VFX스튜디오는 상용 인공지능제품을 활용하여 VFX작업을 한다고 전제. 이 경우 VFX스튜디오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나 영상제작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영상제작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제품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정의로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되기 어려움. 표시의무는 이용자를 직접 접촉하는 영상제작자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법률 해석으로는 VFX스튜디오가 표시의무를 부담함.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대한 use case를 구체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요구됨. 위 use case만 보면, 현행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정의에서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자료]

EU AI Act

이수경 위원

[수정 제안]

인공지능 사업자”란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그러나, 사실 선행연구인 박상철 교수의 논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여기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영리성, 반복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용어는 우리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20724판결)에서도 지적하듯이,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은 개발하고 실행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애초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활용도 사경제주체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많아서 굳이 사업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위원이 수정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자구의 수정만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에 방점을 둔 것이고, EU AI Act처럼 개발자와 실행자로 칭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와 기술의 반영을 고루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실행자’라고 수정을 하게 될 경우 인공지능을 사업용을 활용하는 의미를 잘 반영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개념과 중복될 여지가 있어 제2조 제7호에서는 저 정도의 수정을 제안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연구의견과 보폭을 맞추고자 한다.

근거 1: 인공지능 사업자에서 법인과 개인을 구별하면서 국가기관이나 단체(?)를 별도로 규정하여 조문의 형식적 측면에서 의문이 있음 (법인과 자연인, 이렇게 구분하거나, 적용범위(제3조)에서는 “시장”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고, 2조 자목에서는 ‘공공기관’ 등으로 표기하고 이하 “국가기관”이라고 정의한 뒤에, 같은 조 7호에서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으로 나열되어 조문의 통일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근거 2: 인공지능 사업자에 개발사업자, 이용사업자로 구분한 것은 이해가 되나, 의무 조항에서 인공지능사업자를 주체로 하다 보니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될 것이고 (의료 인공지능은 생래적으로 고영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현장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사용을 망설이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우려

[참고 자료]

라기원, 이유봉, 윤길준, “AI 활용과 대응을 위한 입법분야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4.

박상철,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 전 개정 필요성”, 「정보법학」 제28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24.

이원복,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의료 인공지능의 규제”, 「법제」 통권 제708호, 법제처, 2025.

EU AI Act, Section 3 : Obligations of Providers and Deployers of High-Risk AI Systems and Other Parties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section/3-3/>>

Quaranta, M., Amantea, I.A. & Grosso, M. Obligation for AI Systems in Healthcare: Prepare for Trouble and Make it Double?. Rev Socionetwork Strat 17, 275–295 (2023). <https://doi.org/10.1007/s12626-023-00145-z>Quaranta,

Anton Hummel, Håkan Burden, Susanne Stenberg, Jan-Philipp Steghöfer, Niklas Kühl, The EU AI Act, Stakeholder Needs, and Explainable AI: Aligning Regulatory Compliance in a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John Brandt Brodersen, Ilaria Amelia Caggiano, Pedro Kringen, Vince Istvan Madai , Walter Osika, Giovanni Sartor, Ellen Svensson, Magnus Westerlund, Roberto V. Zicari, Getting Ready for the EU AI Act in Healthcare. A call for Sustainable AI Development and Deployment

<https://doi.org/10.48550/arXiv.2505.07875>

■ 대 상: 이용자

■ 조 문: 제2조 제8호

■ 담 당:

- 주집필자 - 오정익
- 부집필자 - 박도현, 박소영, 정다영

오정익 위원

제2조 제8호

[현재]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수정 제안]

제안 1: 삭제,

이와 함께, 제4조의 ‘이용자’는 ‘국민’으로, 제31조 제1항의 ‘이용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공받는 자’로, 제3항의 ‘이용자’를 ‘해당 결과물을 시청 또는 향유하는 자’로, 제34조의 ‘이용자’를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혹은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을 받는 자’로 변경

제안 2: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단, 제36조를 제외하고, 위 “이용자”에는 인공지능제품,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아 별개의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와 함께, 제31조 제3항의 ‘이용자’는 ‘해당 결과물을 시청 또는 향유하는 자’로 변경

제안 1 근거: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1항),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3항), 제34조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인공지능기본법상 ‘이용자’의 정의는 위와 같은 제31조 및 제34조의 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의미를 지님.

- 한편 제2조 제8호의 정의에 따르면, 인공지능제품이나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아 또 다른 인공지능제품이나 인공지능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이하 ‘2차 인공지능사업자 등’)까지 이용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적어도 혼동의 여지가 있음).
- 그런데 최초 인공지능사업자가 위와 같은 2차 인공지능사업자 등에게 위와 같은 사전 고지를 할 필요가 없음. 또한 애초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고지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해당 결과물을 시청하거나 향유하는 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공지능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제품이나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예를 들어 A 회사가 서류심사나 면접 과정에서 인공지능사업자가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심사 대상자나 면접 대상자는 해당 인공지능서비스를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닌 A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인공지능제품이나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라고 보는 것에 무리가 있음), 사전 고지 등을 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제2조 제8호와 같이 “이용자”를 정의하고, 제31조 등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그 의무의 내용에도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제2조 제8호의 “이용자”의 정의를 삭제하고, 제31조 등 중요 의무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맞도록 그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제안 2 근거:

- 위 제안 1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용자”의 개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제31조, 제34조 등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기존의 제2조 제8호와 같은 “이용자”의 정의는 부적절함.
-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별개의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즉 2차 인공지능사업자 등)에게까지, 최초 인공지능사업자가 위 제31조 제1항상의 고지의무, 제34조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이는 계약관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함이 바람직)
- 한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31조 제3항의 의무는 해당 결과물을 시청하거나 향유하는 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따라서 제31조 제3항에서 ‘이용자’는 ‘해당 결과물을 시청하거나 향유하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1. 박상철,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 전 개정 필요성- 규제 조항의 체계·축조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vol.28, no.3, 2024
2. EU AI ACT

■ 대 상: 영향받는 자

■ 조 문: 제2조 제9호

■ 담 당:

○ 주집필자 - 박소영

○ 부집필자 - 박도현, 전응준

박소영 위원

영향받는 자 (제2조 제9호)

[현재]

9.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수정 제안] 삭제

근거 1: ‘영향받는 자’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이용자 개념과 혼동되는 부분이 있음

근거 2: 전체 중 한번 등장(‘제3조 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하므로 정의의 필요성이 적음

근거 3: 용어를 그 법령의 한두 조문에서만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용어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해당 조항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됨

[참고 자료]

법령입안심사기준

■ 대 상: 기본 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 조 문: 제3조

■ 담 당:

- 주집필자 - 박도현
- 부집필자 - 이수경

박도현 위원

기본원칙 (제3조)

[현재]

-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정 제안]

-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근거 1: 기본원칙의 첫 번째 조항이니만큼, 정의조항 중 가장 추상적 용어인 ‘인공지능윤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1항)

근거 2: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11호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병렬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성’ -> ‘안전성 및 신뢰성’으로 수정. (제3항)

근거 3: 길게 작성된 문구가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10조 ‘인공지능사회’에 모두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표현을 압축함. (제4항)

※ 토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를 참고하여 다음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재 제3항을 이와 같이 수정함; ‘안전성 및 신뢰성’ 관련 내용은 제1항에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인공지능 윤리 원칙 관련 추가 쟁점

현재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인공지능윤리’를 안전성 및 신뢰성을 포괄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규정하면서도, 법명, 제1조, 제2장에는 ‘신뢰’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였으며, 제4장의 제목에는 ‘윤리’와 ‘신뢰성’이 병렬적으로 열거됨. 따라서 ‘윤리(성)’이라는 최상위 개념 및 그 하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병존하는 개념 체계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함.

법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인공지능 발전과 **윤리**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조, 제2장: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 건전한 발전과 **윤리** 기반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 인공지능윤리 확보

■ 대 상: 적용 범위

■ 조 문: 제4조

■ 담 당:

- 주집필자 - 전용준, 최경진
- 부집필자 - 박도현, 이수경

제4조 제1항 역외적용

[현재]

-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수정 제안]

-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 시장 또는 영향을 받는 자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근거 1: AI 법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서비스 ‘이용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자’이므로, 역외적용의 연결점은 ‘이용자’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 자’가 적절함. ‘이용자’를 단순히 ‘영향받는 자’로 대치하면, 문장이 어색해 지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사용하는 역외적용 문구를 활용하여 수정함

근거 2: 역외적용의 규정 표현에 관하여, 공정위가 관할하는 공정거래법, 과기부가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금융위가 관할하는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표현이 일부 상이하나 모두 효과주의 내지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한 규정들이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사용하는 문장을 사용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됨

근거 3: 현행 AI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공법상 규제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당장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시점에서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공법적 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역외적용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대 상: 적용 배제 범위

■ 조 문: 제4조 제2항

■ 담 당:

- 주집필자 - 강태욱
- 부집필자 - 박도현, 오정익

강태욱 위원

[현재]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안]

- ② 이 법은 인공지능 또는 그 산출물이 다음 각 호에 따라 개발되거나 이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1.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경우
 2. 과학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개발·이용되는 경우
 3.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시험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개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공지능기술이 공개되고 무산으로 공중이 이용하도록 허락된 경우로서 제2호 제4호의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제32조 제1항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근거 ; (1) 국방 또는 국가안보로만 적용 제외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추가로, 연구 개발 단계의 제외, 사적인 개발·이용 제외, 재판 사무의 제외, 무료 OSS에 대한 일부 적용 제외 검토 필요

(2) '만' 개발, 이용되는 인공지능의 의미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산출물이 오로지 국방 등 적용제외 목적을 위한 것인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할 것인지 검토 필요

■ 대 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 문: 제5조

■ 담 당:

주집필자 - 정다영

부집필자 - 박도현, 박소영

[현재]

-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 제안]

-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시스템,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사회 및 이에 준하는 인공지능 관련 제반 사항(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거 1: ‘인공지능시스템’ 표현 추가

- ‘인공지능시스템’은 인공지능기본법 뿐 아니라, EU AI Act Article 3(1) 및 OECD에서도 인공지능 규제 의 핵심으로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인공지능등”의 개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근거 2: 포괄적 표현 도입

- 기존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와 같은 나열식 접근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개념을 포괄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이에 준하는 인공지능 관련 제반 사항’ 등 포괄적 표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미래 기술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

근거 3: ‘취지’ 표현 추가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우선 적용 원칙 뿐 아니라 목적 준수 의무를 명시함에 있어 ‘취지’를 추가하여 다른 기본법들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2항의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 자료]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1689/oj/eng>

OECD, Explanatory memorandum on the updated OECD definition of an AI system,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Papers, March 2024 No. 8, 2024.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4/03/explanatory-memorandum-on-the-updated-oecd-definition-of-an-ai-system_3c815e51/623da898-en.pdf

■ 대 상: 고영향인공지능의 확인

■ 조 문: 제33조

■ 담 당:

- 주집필자 - 정다영
- 부집필자 - 박도현, 오정익

[현재]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 제안 1안]

-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삭제
-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수정 제안 2안]

-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수정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수정 제안 3안]

-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수정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신속

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수정 제안 1안]

근거 1: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삭제

- 고영향 인공지능의 적용 여부를 모든 AI 제품·서비스에 사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면,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저위험 AI 사업자까지도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어 산업 전반에 규제 위축 효과가 발생함.
-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일률적으로 고영향 여부 확인을 요청하게 하는 구조는, 사실상 해당 부처가 AI 사업의 적정성 판단을 관문처럼 결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 이는 법률상 신고·인가·허가제도와 유사한 행정규제로 비화할 수 있으며, 기술혁신과 민간 자율성 원칙에 반함.
- 고영향 인공지능은 보건·의료, 금융, 교육, 치안,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모든 해당 분야의 위험성 판단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해 과기정통부의 확인 절차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거나, 다른 부처와의 책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함.

근거 2: 제33조 제3항 잔존 및 조문 제목 변경

- 제33조 제3항은 규범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적 참고자료인 가이드라인을 수립·보급하는 내용이므로,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 없이도 자율적 판단을 위한 기준 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비례성·예측 가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수정 제안 2안]

근거 1: ‘그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수정

- ‘그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제품 또는 서비스 그 자체가 인공지능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인공지능은 제품·서비스 내에 내장되거나 연동되는 하나의 시스템 또는 기능으로 존재함.
-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양한 인공지능 요소(예: 추천 알고리즘, 챗봇, 음성 인식 등)를 복합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바, 복수의 AI 요소 중 고영향성 판단의 필요가 있는 ‘시스템’ 단위로 규제 포커스를 조정함으로써 기술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EU AI Act는 AI system을 중심으로 위험등급 분류를 하며, 서비스가 아니라 시스템 단위로 고위험성(high-risk)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바, 수정 제안 2안은 EU 모델과 유사하게 인공지능시스템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하여, 국제적 법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근거 2: 확인 절차의 신속성 추가

- 고영향 인공지능 판정은 기업의 제품·서비스 출시, 공공조달, 안전성 확보 등과 직결되므로 신속한 절차가 필요함

[수정 제안 3안]

근거 1: ‘인공지능제품’, ‘인공지능서비스’ 및 ‘인공지능시스템’ 표현 활용

- 제2조 제2호에 정의되어 있는 ‘인공지능시스템’, 제2조 제6호에 정의되어 있는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념을 활용하여 법령 전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근거 2: 확인 절차의 신속성 추가

- 고영향 인공지능 판정은 기업의 제품·서비스 출시, 공공조달, 안전성 확보 등과 직결되므로 신속한 절차가 필요함

[참고 자료]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1689/oj/eng>

2소위

■ 대 상: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조 문: 제31조

■ 담 당:

○ 주집필자 - 박상철

○ 부집필자 - 이소은, 김병필, 김도엽, 신용우, 이강혜, 이상현, 주현경

1. 현행 조항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 필요성

- (1) 운용사실의 고지(제1항), (2) 결과물의 표시(제2항), (3) 생성사실의 고지·표시(제3항)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혼란 우려.
- 운용사실의 고지(제1항): (1)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운용자(deployer)를 포함한 이용자에게 운용사실을 고지하라는 것인데, 특히 운용자는 AI임을 알고 제공받는 것이라, 규제목적이 불분명(EU AI Act의 경우 영향받는 자에게 고지), (2) 영향받는 자에 대한 고지 또는 공개의무로 구성 시 인공지능이용사업자보다는 영향받는 자와 상호작용하는 운용사업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3) 해외법제에 비해 규제 대상 AI의 범위가 너무 넓고 생성형 AI를 모

두 고영향처럼 간주하는 문제(EU AI Act의 경우 제50조제1항은 자연인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에, 제26조 제7, 11항은 고위험AI 중 고용 현장이나 자연인 관련 결정 AI에만 고지의무 부과), (4) 시행령안 제22조제1항이 사실상 약관, UI/UX 등에 의한 공개 방식의 고지를 허용하여 법률상 근거 확충 필요.

- 결과물의 표시(제2항): (1) 역시 입법목적이 불분명하고 제3항과 구별이 되지 않음, (2) 인공지능이용사업자보다는 최종 이용자(end user)가 주로 생성AI 결과물을 생성하므로 적용범위가 협소하고 실효성이 낮음.
- 생성사실의 고지·표시(제3항): (1) 역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고 적용범위 협소, (2) 워터마킹 등은 개발자의 방식과 플랫폼의 방식이 합치되어야 하니 표준화가 필요한데, 우회기술이 지속 발달하여 정부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단일기술을 강요하면 오히려 쉽게 우회되므로, 개발자와 플랫폼 간의 자율규제가 합당, (3) 영향받는 자가 아닌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

3. 개정 제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운용사업자는 그 인공지능시스템이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영향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향받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생성물”)이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의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사업자와 생성물로서 실재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화상, 영상 또는 음향 등(“화상등”)이 배포되거나 배포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상등의 오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화상등이 생성물이라는 사실의 탐지 또는 탐지를 용이하게 하는 식별자 등의 화상등 내 삽입의 기술적 방식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는 활동(이하 “자율규제”라 한다)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자율규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항은 고지, 제2항은 표시(labeling), 제3항은 워터마킹(watermarking) 등 기계판독 가능 형식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 운용사실의 고지·공개(제1항): 직접 상호작용하는 운용사업자가 영향받는 자에게 고지 또는 공개하도록 하고, 규제 대상 AI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면서, 공개 방식의 법률상 근거 확충.
- 생성물 표시(제2항): 주무부처가 정연한 규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하면, 이에 기해 각 부처

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 법령을 개정하여 성범죄 또는 소비자·투자자·유권자 등 기만 방지를 위한 규제 등을 구체화하도록 함.

- 기술적 방식(제3항): 개발사업자와 플랫폼 등 간 자율규제로 규정.
- 개발사업자, 운용사업자의 정의는 이하 제33~35조에 대한 개정안 참조.

■ 대 상: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조 문: 제32조

■ 담 당:

- 주집필자 - 박상철
- 부집필자 - 이소은, 김병필, 김도엽, 신용우, 이강혜, 이상현, 주현경

1. 현행 조항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 및 완화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2. 개정 필요성

- (1) 적용 범위를 범용인공지능시스템에 한정하고, (2) 개발자의 의무로 한정하며, (3) 에이전트와 추론 기술의 발달로 학습 연산량 이상으로 실행(implementation) 연산량이 중요해 지고 있어 다양한 성능 기준에 따라 고성능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4) 국제적 합의의 취지에 따라 안전연구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3. 개정 제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범용인공지능시스템”이란 광범위한 데이터로 훈련되어 다양한 맥락과 용례들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 중 성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2조(범용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① 범용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사업자는 범용인공지능시스템이 운용되기 전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생 략)

-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안전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대 상: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사업자의 책무, 영향평가

■ 조 문: 제33~35조

■ 담 당:

○ 주집필자 - 박상철

○ 부집필자 - 이소은, 김병필, 김도엽, 신용우, 이강혜, 이상현, 주현경

1. 현행 조항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5.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개정 필요성

- 2025년 2월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이후 AI에 대한 브뤼셀 효과는 대체로 부정되고 있고, EU는 고위험 AI 규제를 유예하고 AI Act를 전반적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며, 현재 EU식 수평 규제를 추진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중남미(브라질, 페루, 칠레 등), 동남아(베트남 등) 정도여서, 갈라파고스 규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규제의 파편화를 막고 선진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맥락특유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함.
- 주무관청은 하위규정을 통해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EU AI Act상 운용자(deployer)가 아닌 배포자(distributor)(단, 개발자가 직접 배포할 경우 제공자(provider))로 해석함으로써 운용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경감했으나, (1) 운용자에 비해서도 규제의 필요가 적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포함된 배포자 등에 규제가 집중되는 점, (2) 이용자와 영향받는 자가 혼용되어 혼란의 우려가 있는 점, (3) 하류(downstream)의 용례(use cases)를 기준으로 고영향을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류(upstream)의 개발자를 규제하려면 개발자의 의도된 목적(intended purpose) 개념이 필요한데 이 개념이 결여된 점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
- 아울러, 고영향 인공지능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최소한 서로 이질적인 권익영향 인공지능 용례의 신뢰성(차별금지, 투명성)과 안전영향 인공지능 용례의 안전성은 구분하여 규율할 필요.

3. 개정 제안

인공지능사업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개편: 개정안상 개발사업자는 EU AI Act상 제공자(provider)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운용사업자는 EU AI Act상 운용자(deployer)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이용자”에 포함되었던 개념임. 현행법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중 EU AI Act상 배포자(distributor)는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개정안상 배포사업자로 별도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다만, 인공지능시스템의 대한민국 내 출시 전 또는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그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관계에서 인공지능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개발사업자: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하여 나목의 사업자(개발사업자 스스로가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자. 기존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변경을 한 자 및 인공지능시스템을 제3자에 개발시켜 자신의 명의 또는 상표 등 영업표지 하에 제공하게 한 자

를 포함한다.

나. 운용사업자: 사업 또는 공무 목적으로 가목의 사업자(자신이 개발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개발한 인공지능시스템을 운용하는 자

다. 배포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개발한 인공지능시스템을 나목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

(1) 제1안: 맥락특유적 규제 전환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권익영향 인공지능 용례”란 한정된 중대한 권익을 특정인에게 배분하거나 특정인의 중대한 권익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시스템의 예측 등을 주요한 참고사항 또는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안전영향 인공지능 용례”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스템의 작동 또는 제어를 위한 인공지능시스템의 활용을 말한다.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삭 제〉

제34조 (권익·안전영향 인공지능 용례의 신뢰성·안전성 확보 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권익영향 인공지능 용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법령상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에 대한 편향 등 권익 침해 위험의 식별과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의 경감 조치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에 대한 설명

3. 그 밖에 권익영향 인공지능 용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영향 인공지능 용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기준

2. 그 밖에 안전영향 인공지능 용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제35조(권익·안전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에 해당하는 권익 또는 안전영향 인공지능 용례의 운용자는 ...

② 〈삭 제〉

■ 세계적인 규제체계의 흐름에 부합하고 중복·과잉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들이 기존 법령을 개정하여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뢰성·안전성 기반을 마련하는 맥락특유적 규제로 전환.

■ 다만, 정연한 규제를 위해 주무관청이 권익영향 인공지능 용례의 신뢰성과 안전영향 인공지능

용례의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각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도록 함.

(2) 제2안: 수평규제 유지안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개발사업자는 그 인공지능시스템의 의도된 목적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용사업자 또는 배포사업자가 인공지능시스템의 의도된 목적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변경한 경우, 개발사업자 대신 제1항의 검토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개발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의도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2. 제4조사목, 자목 또는 차목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3. 영향받는 자의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4. 제4조가목 내지 마목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 사람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설계

5.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② 운용사업자 또는 배포사업자가 개발사업자가 의도한 목적과 다르게 인공지능시스템을 운용 또는 배포하여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범용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을 위하여 운용 또는 배포하는 경우 개발사업자 대신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한다.

③ (생략)

④ 다른 법령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제1항에 준하는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에 해당하는 운용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운용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 꼭 수평규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면, 보호대상을 이용자로부터 영향받는 자로 전환하고, AI 가치망 참여자들의 의무 배분을 합리화하면서, 상류의 개발사업자의 하류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고, 중복규제 해소 메커니즘을 합리화.

- 인공지능 영향평가 노력의무는 영향받는 자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는 이용사업자에게 부과하기 부적절하고 EU나 미국 등의 입법례처럼 운용사업자에 부과해야 하나, 산업 전체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공공부문에 시행.

3소 위

■ 대 상: 조사, 제재규정

■ 조 문: 제40조, 제43조

■ 담 당:

- 주집필자 : 권창훈
- 부집필자 : 송재일, 윤혜선, 이승민, 정원준, 한상훈

1. 현행 조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2026. 1. 22. 시행)]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유예규정 적용 여부] 규제 신중론 내지 시기상조론(☞ 시행유예안)

2. 개정 필요성

- 현 시점에서는 ‘인공지능 발전’이 ‘신뢰 기반 조성’보다 중요한 시기임
 -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수준과 경쟁력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뒤처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국내 AI업체의 열악한 자본력과 낮은 기술수준(상용 AI, 독자적 AI 파운데이션모델 등), 한국어 학습데이터의 부족한 절대량과 낮은 품질, 미국과 중국의 AI 시장의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국내 AI 산업의 보호와 진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 폐기 및 혁신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등 EU,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음
- 또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규정(제31조 내지 35조)의 포괄규제적 성격(☞ 제2소위 논의 참조)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사업자의 사업활동 위축은 예상 이상으로 클 것임
-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일정기간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래와 같은 ‘3년 유예안’이 바람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안(2025. 4.17. 발의, 의안번호 9896)]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실시 등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 폐기 및 혁신 중심 정책을 추진 하는 등 EU,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음. 또한,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현행법에서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규정은 그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일부 규제 조항에 대하여 그 시행일을 3년 유예

함으로써 AI 시대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

3. 개정 제안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 -----, -----<u>시행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 제40조, 제43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면서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사실조사권 규정] 규제절차에 대한 개선 권고-사실조사 규정 관련(👉 시행유예안)

1. 개정 필요성

- 인공지능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실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인공지능기본법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문제제기) ‘신고나 민원’만으로 행정상 강제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의 국내 인공지능 산업에 위축을 가져오고, 무분별한 조사촉구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예방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반론1) 이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사실조사는 범위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권한이고, 인지·

신고와 그 실체가 다르지 않으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과도한 조사가 시행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음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반론2) 나아가 강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기본법 제4조에 따라 최소조사원칙, 비례원칙 등에 따라야 하므로 남용의 우려가 크지 않음

인공지능기본법 제40조(사실조사 등)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정제안

○ (결론) 현행 규정 존치하되, 위 1의 개정권고안과 같이 시행유예함이 타당함

[과태료 규정] 규제대상의 포괄성 내지 불명확성 개선 권고-과태료 규정 관련

1. 개정 필요성

- 인공지능기본법 제42조(별칙  비밀누설) 및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2호(국내대리인 지정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음
- 문제는 인공지능기본법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균형성과 포괄성 내지 불명확성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위축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됨
 -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금액의 규모보다는 그에 따른 사실상의 제재가 사업상 중대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음
 - 조달사업의 입찰자격제한, 사업인가 등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는 치열한 경쟁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임
- 특히 제43조 제1항 제1호(제31조 제1항의 고지의무 위반)와 같은 항 제3호(제32조 제2항의 표시의무 위반 등)의 차별에 대한 합리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조임
 - 제43조 제1항 제1호(제31조 제1항의 고지의무 위반)는 사실조사의 대상도 아니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도 아니어서 위반행위 자체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반면 제43조 제1항 제3호(제32조 제2항의 표시의무 위반 등)는 제40조의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음
 - 제31조 제1항의 고지의무 위반이 다른 의무위반과 달리 회복가능성이나 폐해가 크다는 점에 차별성을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는 함
 -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이 타당한지도 의문이고, 이를 고려하여 차별성을 두었다는 입법자료도 발견하기 어려움
- 더욱이 과태료 재판의 실무적 운용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사업자의 방어권 지장에 더욱 심각한 제약을 가져옴
 - 형사벌은 공판절차에 따라 충분한 공방의 기회가 부여되나 과태료는 방어권 행사 즉 충분히 다룰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참고사항: 인공지능기본법 제43조의 과태료 재판의 성질〉

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 비송사건x, 행정소송x

○ 또한 과태료 등의 제재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되지 않음

- 일본의 2025. 6. 제정·공포예정인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

률(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인공지능추진법’)은 일본은 사업자에게 국가 시책에 대한 협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별도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개정 제안

○ (결론) ① (주위적) 과태료 규정의 삭제 권고 → ② (예비적) 시행 유예안

- 예비적 결론인 시행유예안에 따를 경우에도 제31조 제1항의 고지의무위반도 나머지 의무위반과 같이 시정조치를 거쳐 그 미이행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위적) 개정권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 제40조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제40조 제1항의 각 호 중 ‘제31조 제2항·제3항’을 ‘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예비적) 개정권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 제40조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제40조 제1항의 각 호 중 ‘제31조 제2항·제3항’을 ‘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으로, 제43조 제1항 제1호 중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제40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각 수정하고, 제4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3. 기타 검토사항 제안

① 위반행위별 차등규제의 타당성: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차등규제의 필요성, 차등규제의 적정한 기준 등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개선검토 결과(제2소위) 참조

② 과태료 감경·면책규정의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 불필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가 당연 적용되므로, 추가로 규정할 필요성 없음

〈참조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 ③ 제39조 제1항(과기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의 문제점은 없는지(과도한 규제 측면 등): 큰 문제없음

4소 위

■ 대 상: 학습용 데이터 관련 특례 신설

■ 조 문: 제15조의 2 신설

■ 담 당:

- 주집필자 - 송도영
- 부집필자 - 안정민

1. 현행 조항

-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 필요성

인공지능기본법 제15조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필요한 데이터(이하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학습용 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데이터 전송 또는 제공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부문 보유 데이터의 공유·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해당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소관 데이터 제공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수요기관, 데이터안심구역 또는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인공지능기본법 제15조) 등을 통해 제공·전송하는 방안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관련 담당 공무원의 면책을 위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마련하고, 동 제도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면책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3. 개정 제안

(1) 인공지능기본법에 AI 학습용데이터 특례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방안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해 민간이 학습용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15조의 2로 특례 조항을 신설

제15조의2(학습용데이터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해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카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등을 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협회, 단체 등(이하 “학습용데이터보관자”라 한다)에게 학습용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구축사업자”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통하여 학습용데이터보관자에게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에 필요한 학습용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보관자에게 학습용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구축사업자의 요청의 적절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학습용데이터보관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바에 따라 통합제공시스템 또는 구축사업자에게 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학습용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학습용데이터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더라도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공 여부나 목적 달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학습용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법령상 학습용데이터의 목적외 이용이나 제공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상 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나 절차가 부존재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3. 법령상 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거나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당 학습용데이터의 가치가 현저하게 저해되어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습용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교·형량(衡量)**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학습용데이터의 내용

2. 학습용데이터의 제공 요청의 취지 및 필요성
3.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또는 제작 등을 하려는 결과물의 내용 및 효용
4. 학습용데이터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 및 정도
5.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처리
6. 학습용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국내외 관행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의 제공·이용에 관한 특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한 사항

-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심의·의결함에 있어 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
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⑧ 제5항에 따라 특례를 받은 학습용데이터보관자는 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⑨ 학습용데이터보관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이 규정에 따라 학습용데이터 제공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
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
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례의 신청, 세부 심사기준, 연계·활용 계획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AI는 알고리즘 편향, 설명가능성 부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복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
는바, 정제된 학습용데이터의 확보 및 이용이 중요
- 현재도 인공지능기본법은 물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나 「국가지식
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도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지만
목적외 이용이나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들에 관한 특례 부여 및 면책의 효력은 없는바, 본 개
정안은 특례가 필요한 경우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요기관,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인공지능기본법 제15조)
등으로 제공 또는 전송하는 것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의 면책을 위해서
는 별도의 특례 제도를 마련하고, 동 제도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 다만, 기존 규제샌드박스과 같이 특례를 신청한 개별 기업 등에 1회성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인공지능기본법」상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나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해
학습용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집적한 후, 이를 기반으로 기업과 국민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방법은 안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
도록 함이 적절함
- 인공지능기본 제15조제5항은 소정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비용

징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한 기관 등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의 동인으로 작용하도록 정책 방향 수립 필요

- 학습용데이터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면책을 위하여 인공지능기본법에 면책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대 상: AI 규제샌드박스 도입

■ 조 문: 제20조의 2 신설 또는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 2 내지 3 개정

■ 담 당:

- 주집필자 - 송도영
- 부집필자 - 안정민

1. 현행 조항

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
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인증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구축·운영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 필요성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개별 법령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임시허가·실증특례는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것, ▲허가 근거가 되는 법령이 존재할 것, ▲해당 법령에 적절한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불합리하거나, 다른 법령상 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러한 요건 제한으로 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범용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19조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의 이용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AI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임시허가나 실증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는 내용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AI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참고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로 한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6항 등 다른 입법례와 같이 다른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제24조에서도 '실증시험등'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기반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동 규정에서 말하는 '실증'은 'AI 규제샌드박스'에서 말하는 '실증특례 지정을 받아 실시하는 실증'과는 다르므로, AI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실제 실증특례에 따른 실증 과정에서 '실증기반등'을 활용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AI 기술은 알고리즘 편향, 설명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등 복합적인 윤리·사회적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단순한 규제 완화나 기술 지원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그러나 현행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시장 진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AI 분야의 복합 규제와 규제 공백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AI의 고위험·고불확실성 특성을 반영한 전 주기적 실험·검증이 가능한 AI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

3. 개정 제안

(1) A안 : 인공지능기본법에 AI 규제샌드박스를 신설·도입하는 방안

제20조의2(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특례) ① 인공지능제품, 인공지능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인공지능제품·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검증이나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통하여 이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령상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등의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인공지능제품·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인공지능제품·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실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사업모델 등 구체적인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산업적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동종·유사한 인공지능융합제품·서비스를 연구·개발 및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제1항에 따라 개시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

한 규제특례의 접수 사실 및 추가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공고를 하는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시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모 결과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관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관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 / 2.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위험의 제거 또는 완화, 국제적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
 3.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위한 실증환경 조성 및 구체적인 실증계획의 수립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융합제품·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수준 및 계획(심의·의결 당시 인공지능융합제품·서비스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4.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및 필요성
 6. 손해 발생시 배상 계획의 적절성
 7.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범위 내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인공지능융합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7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9항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의결: 특별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의결

-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실증환경의 조성 및 재정적·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존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사업모델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① AI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 외에도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신뢰성 등도 요구되는 점, ② AI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기존과 같은 개별적 특례 부여 및 관리감독보다는 동종유사기업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컨설팅과 다양한 데이터 확보가 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③ AI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특례 부여시 고려할 사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특례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등에서도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ICT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AI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 B안 : 정보통신융합법상 ‘ICT 규제샌드박스’를 확대·개편하는 방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기술·서비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인공지능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이와 관련된 제한적 시험·기술적검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신뢰성·투명성 등에 관한 검증을 포함한다) 및 적법하게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적법하게 수집한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학습용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거나,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학습용데이터의 가치가 현저하게 저해되거나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산업적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동종·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연구·개발 및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해당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접수 사실(신청인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및 추가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습용데이터에 대한 이용·제공에 관한 유효기간은 학습용데이터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2의2. 학습용데이터의 수집·이용·관리·저장·제공 등의 필요성

3. (현행과 같음)

3의2.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이 탑재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수준 및 향후 계획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아서행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별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조속한 개시, 사업화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AI 규제샌드박스를 전면적으로 신설 도입하는 방안 외에 기존 ICT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시행 7년차에 접어든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조항을 제정하지 않고 일부 개정만으로 신속한 제도화가 가능하다. 현행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개념에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아울러 AI 특화 트랙을 신설하면 기술 특수성에 시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부가조건으로 실증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어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하다.

다만,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사업모델에 대하여 매우 제한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자에게만 개별적으로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실증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 AI 관련 동종유사 사업을 묶어 집단적인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점, 특례부여 후 사후단계에서도 컨설팅을 통한 사업화 및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보다는 관리감독적 성격이 강한 점 등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법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산업적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동종·유사한 인공지능융합제품·서비스를 연구·개발 및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제1항에 따라 개시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접수 사실 및 추가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공고를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시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 각주에 인용된 자료
- 각주에 인용하지 않았으나 관련된 자료를 포함

※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각주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조항에 대하여 여러 개의 제안의견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제안을 1, 2, 3, 으로 내어 쓰시면 됩니다.

※ 참고자료의 경우, 각주 인용자료를 포함해 주시고, 각주에 인용하지 않았더라도 참고할 자료는 포함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시 예시 및 파란색 글자 삭제를 바랍니다.

Memo

Memo

Memo

Memo

펴낸곳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발간일 : 2025년 12월 15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 Korean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KAAIL)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607호 (복정동)

사무국 : Email : kaail.email@gmail.com



한국인공지능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